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광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1월 27일

발 의 자 : 이광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상훈, 김제리, 노식래, 성중기, 송도호, 이승미, 이은주, 이현찬, 정지권 의원(9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배달 사업이 급성장하고 이를 위한 이륜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배달 횟수에 따라 배달 운전원들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 되고 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나홀로의 삶이 늘어나다 보니 이동 수단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 및 횡단보도를 일반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어 보행환경을 크게 위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의 책무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

10. “차량”이라 함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u></p> <p>10. <u>“차량”이라 함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u></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u><신설></u></p> <p>③·④ (생략)</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u></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